

#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호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91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이호대, 김경우, 채인묵,  
강동길, 정재웅, 이승미,  
이병도, 이준형, 경만선,  
봉양순, 권수정, 임만균,  
신정호, 장인홍 의원(14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상 잘못된 약어 사용을 바로잡고, 일부 문법에 맞지 않은 규정을 수정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개정 대상 조문을 어문 규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- 다. 기타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기관에게”를 “기관에 대하여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교육감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단체에게”를 “단체에 대하여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단체에게”를 “단체에 대하여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표창대상)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서울교육·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(“행사”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<u>기관에게</u> 수여한다.</p>	<p>제2조(표창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관에 대</u> <u>하여</u> --.</p>
<p>제3조(표창의 종류)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, 창안상,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<u>교육감</u>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표창의 종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</u> <u>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</u> -----.</p>
<p>제5조(공적상)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<u>단체에게</u> 수여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	<p>제5조(공적상) ----- ----- --- <u>단체에 대하여</u> 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협조상)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<u>단체에게</u> 수여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8조(협조상) ----- ----- --- <u>단체에 대하여</u> 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